

##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

### 원산지 챗터의 구조

- 완전생산기준, 직접운송원칙 등 FTA 특혜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은 협정문에서, 개별 품목에 대한 “품목별 원산지 기준(PSR,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)”은 부속서에 규정
  -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(PSR)은 약 5,000여개(HS 6단위 기준)에 이르는 개별 품목의 생산과정, 교역패턴,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 규정

###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 [제6.1조 및 제6.22조]

- 완전 생산기준 (wholly obtained or produced) (제6.1조 가호 및 다호)
  -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의 경우,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  -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(제6.22조)
    -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
    -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
    -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

-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,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
-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
-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,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,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
- 우주공간에서 채취되어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
- 양국의 영역에서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(recovered goods)

▣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(제6.1조 나호)

- 품목별 특성에 따라, 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이 적용
  - 세번변경기준: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결과, 부속서 4-가 또는 부속서 6-가의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  - 부가가치기준: 생산 과정에서 부속서 4-가 또는 부속서 6-가의 역내가치 포함 비율 충족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
▣ 완전공정기준 (produced entirely) (제6.1조 다호)

-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

**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판정방법 (제62조, 제63조, 제66조)**

▣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(제6.2조)

-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단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/공제법과 순원가법을

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(상세 후술)

■ 세번변경기준 관련 최소허용수준(de minimis) (제6.6조)

- 비원산지 재료(non-originating material)가 해당 품목의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,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제품의 조정가치의 10%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
※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되어 있음.

- 단, 일부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부속서 6-나에 규정

〈 미소기준 적용제외 품목 〉

HS 코드	품목
3류	어류
4류	낙농제품
7류	채소류
1006, 11류	쌀제품
0805, 2009.11~39	감귤류, 주스류
8류, 20류	복숭아·배, 살구류
15류	동식물성 유지
17류	설탕

■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의 “재료가치”(제6.3조)

- 수입 재료의 재료가치 : 재료의 조정가치

※ 조정가치 : “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”에 따라 결정된 가치로서, 제품가치에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,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·부과금 및 경비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가치를 말함.

- 국내 구입 재료의 재료가치 : WTO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
- 자가 생산된 재료의 재료가치 :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

## 기타 원산지 판단 기준

### □ 누적기준 (제6.5조)

- (재료누적) 타 당사국의 원부자재가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,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
- (공정누적)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,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

### □ 대체가능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(제6.7조)

- 석유·고철 등과 같이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(fungible goods and materials)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, 선입선출법·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 판정
  - 일단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
    - ※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란 동 물품의 특성, 기능,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상업적으로 대체가 가능(fungible)한 물품으로, 역내산 재료와 역외산 재료의 물리적으로 구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
    - ※ 예시된 재고관리법의 개념
      - 선입선출법(FIFO) : 먼저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,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

- 후입선출법(LIFO) : 나중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, 나중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
- 다만,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서는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에 대해서도 각국이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(주석 5)

### ■ 세트 물품 (제6.9조)

-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의 조정가치의 15%이하인 경우에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
#### 참고: 세트 물품

- HS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두 개 이상의 물품이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된 것
- "HS 해석의 일반해석규칙"의 규칙 3상의 세트에 해당되는 경우, 세트 내의 각 상품이 모두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. (제6.조제1항)
- (예) 전동식이발기(8510), 빗(9615), 가위(8213), 식물제 타올(6302), 가죽제 케이스(4202)로 구성된 이발세트(8510)

### ■ 간접재료 (제6.12조)

- 원칙적으로 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
- 다만,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간접재료를 고려하도록 함.

#### ※ 간접재료란?

연료, 설비 유지 부품 및 재료, 의류·안전장비 등 상품의 생산·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아니하는 상품 등을 의미

■ 직접운송 (제6.13조)

-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
  - ① 단순 하역·선적, 제품의 보존,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, 당사국 영역 밖에서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
  -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

**농산물 원산지 기준 (부속서 6-가)**

□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

- 화훼, 채소, 과일,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
  - ※ 캐나다,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
-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,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(도축국 기준)

□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

-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
- 제3국에서 수입한 과일, 견과류,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·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

## 자동차 원산지 기준 [제6.2조제3항]

- 자동차에 대해 기업이 공제법(Build-Down), 집적법(Build-Up), 순원가법(Net Cost)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
  - 부가가치 수준은 집적법 35%, 공제법 55%, 순원가법 35%를 규정

$$\text{※ 집적법} = \frac{\text{원산지 재료 가치} * 100}{\text{조정가치}} \quad \text{공제법} = \frac{\text{조정가치} - \text{비원산지 재료 가치} * 100}{\text{조정가치}}$$

$$\text{순원가법} = \frac{\text{순원가} - \text{비원산지 재료 가치} * 100}{\text{순원가}}$$

순원가 : 총비용 - (마케팅 비용+로열티+운송비용 등)

- 자동차 부품의 경우, 품목별원산지규정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적용

## 기타 공산품 원산지 기준 (부속서 6-가)

### □ 화학제품

- 양국의 입장을 공히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
  - ※ 주요공정기준: 화학반응, 정제공정 등 협정이 정한 일정한 공정을 역내에서 거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

### □ 신 발

- 역외산 갑피(upperts) 사용이 인정되나,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역내산 갑피 사용요건을 적용

□ 기계, 전기·전자, 철강

-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,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가가치 기준(공제법 및 집적법) 적용
  - ※ 섬유 분야 원산지는 제4장 섬유 및 의류(p.41) 참조
  - ※ 섬유·의류 원산지 기준은 협정 부속서 4-가에 별도 규정

**특혜관세의 신청 (제6.15조 및 제6.16조)**

□ 당사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 가능

- 원산지증명서의 경우, 수출자, 생산자,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일정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.
  - ※ 한·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자 인지(knowledge)에 의해서 특혜관세 신청을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
  - 다만,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도, 특혜관세 정산 이전에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

□ 원산지증명은 단일 선적 외에도,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 (포괄증명)

□ 미화 1,000불 이하의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생략

- ※ 미국 세관국경보호국(CBP) 규정 19 CFR 10.1006(a)(2)는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한국산 물품 기준액을 미화 2,500불이하로 규정함으로써 협정상 기준보다 완화

□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함.



## 원산지 직접검증제도 (제6.18조)

-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
  - 수출국 영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시설에 대한 수입국 당국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토록 규정
- 검증 결과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한 부정적 예비판정시, 수입국은 수입자에게 추가정보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, 수입자에게 최종 결정 통보시, 사실관계와 그 법적 근거를 포함할 필요
- 원산지 증빙자료 미제출, 방문조사에 대한 거부 경우는 특혜관세 대우 배제 가능
- 검증 결과 허위 신고나 허위 증명 적발시, 수입국은 특혜관세 대우 배제 가능
  - 수입국이 허위 신고·증명 결정시, 수입국은 당해 수출자, 생산자, 수입자가 협정상 의무를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출자, 생산자, 수입자의 이후의 동일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대우 중지 가능

## 수출입 관련 의무 (제6.17조, 제6.19조, 제6.20조)

-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증명 발급 일로부터 5년간,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
  - 증빙서류란 해당 수출품 및 동 상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입원가 증빙서류, 생산증빙서류 등을 지칭

- 원산지상품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수입자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며, 일정 서류 구비시 납부 관세 환급 가능
  - 상품이 수입 시점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시
-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이 발부한 원산지 증명서류의 오류사항을 수입자 등에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

### 개성공단 관련 합의내용 (부속서 22-나)

※ 최종 조항챕터의 부속서로 규정

-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
  - 양국간 “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(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)”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(OPZ)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
    - ※ OPZ 지정기준(예시) :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, 노동 기준·관행, 임금 관행, 영업 및 경영 관행(단, 북한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)
  -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,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의 최대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
  -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들에게 권고되고, 각 당사국은 OPZ에 대해 협정문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

### 참고: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

- 구성 및 운영 :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, 협정 발효후 1주년에 개최  
(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)
- 기능
  - 한반도 상황이 OPZ 설립 및 개발에 적절한지 검토
  -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
  - OPZ 지정기준 수립
  - 동 지리적 구역들의 OPZ 지정기준 충족여부 판정
  -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